

의안번호	제17호
의결 연월일	2026년 3월 일 (제335회)

심 의 의 결 사 항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병훈 의원 등 3인
제출연월일	2026. 3. 5.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박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7호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박병훈·정옥균·심정수 의원

1. 제정이유

- 최근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와 소비 위축으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군민들 또한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산군 차원에서 민생안정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지원 금액·지급 시기·지급 방식 등 핵심 사항 전반을 군수의 재량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상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의결권과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급 시기와 규모를 행정 권한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민생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안 입법의 성격을 가짐.

- 우선, 지원금 지급 시기를 선거 이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생지원이 선거 일정과 연계된다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급 상한은 1인당 연간 50만원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금산군이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군 부담 추정액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사업 미선정에 따른 군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임.
- 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 과정에서 해당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하도록 설계하여 기존 필수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아울러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군수의 단독 판단에 따른 집행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의회의 견제와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함.
- 민생지원은 그 필요성만큼이나 집행의 절차와 구조 또한 중요하므로 본 조례안은 일회성·재량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의회와의 협의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생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제 1조, 제2조)
-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안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 신청 및 결정(안 제10조)

- 지급 제외 및 환수(안 제11조, 제12조)
- 통지 및 이의신청(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 비용추계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26. 3. 5. ~ 2026. 3. 12.)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일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금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지원계획”이란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사유, 대상, 금액, 재원,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급 금액의 조정 등 중복지원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급사유 및 기본원칙)

①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고용·산업 구조의 급격한 침체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2. 그 밖에 위와 유사하게 민생경제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기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 지표, 상위 법령 및 중앙행정기관의 위기지역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군민에게 보편적 지급을 하되, 재정 여건, 위기 유형 및 지원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피해 정도 등을 반영한 선별적 지급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①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 외에 군에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생계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외국인 등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형태 및 지급금액 등)

①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유통이 기술적·제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긴급한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여 지역화폐 지급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그밖에 지역화폐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목적, 위기 정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및 사용범위, 신청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의회 보고)

①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급사유 및 목적
2. 지급대상 및 인원(추정 포함)
3. 지급금액 및 총 소요예산, 재원 조달방안
4. 지급방법, 신청 및 심사 절차

5. 추진일정 및 행정기관·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실적, 효과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산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민생안정지원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위기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

3. 지급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민생안정지원금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하되, 8명 이내로 한다.

가. 군의회가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1명

나. 민생경제·복지·재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와 의장이 추천하는 각 2명

다. 관계 공무원(민생안정기금 담당 국장 및 과장)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신청 및 결정)

①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지급제외) 군수는 지원 지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민생안정지원금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적정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통지 및 이의신청)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급 제외 또는 제12조에 따른 환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유, 금액,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생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